

●해양수산부고시 제2022-194호

「항만법」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「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6일

해양수산부장관

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

1. 제4차('23~'30)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

가. 수립배경

「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」에 이어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을 5년 단위로 제시

나. 주요내용

□ 계획의 근거 및 성격

○ 근거 : 「항만법」 제44조

○ 성격 : 제4차 항만기본계획(2021 ~ 2030)과 연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 종합계획

□ 계획의 범위

○ 시간적 범위 : 2023년 ~ 2030년

○ 공간적 범위 : 31개 무역항

○ 내용적 범위

-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기준과 수요에 관한 사항

- 항만배후단지의 조성·공급에 관한 사항

-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

□ 계획의 주요내용

○ 목표연도(2030년)까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수요 산정 및 조성·공급계획,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

다. 세부 수립내용

「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」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f.go.kr>) “알림·뉴스 → 알림 → 공지사항”란에 게재하며, 해양수산부(항만정책과) 및 관할 항만관리청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라. 시행일자 및 다른 고시의 폐지

□ 시행일자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「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2-172호, 2022.11.11)은 폐지함.

2. 항만배후단지 지정·변경·해제

가. 항만배후단지 대상 항만

○ 부산항, 인천항, 광양항, 평택·당진항, 울산항, 포항항, 마산항, 목포항

나. 주요내용

○ 항만배후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,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,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, 시설의 배치 계획 등

다. 세부내용

○ 항만별 항만배후단지 지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f.go.kr>) “알림·뉴스 → 알림 → 공지사항”란에 게재하며, 해양수산부(항만정책과) 및 관할 항만관리청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라. 시행일자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